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일시 : 2023. 3. 29.(수) 14: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개회식

개회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주제발표

좌 장 안경봉 교수 (국민대)

발 표 오문성 교수 (한양여대)

지정토론

토론자 홍도현 세무사

심충진 교수 (건국대)



[공지사항] * 포럼 영상 촬영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 탑재 예정

*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 게재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05	(개 회 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4:05-14:45	좌 장 안경봉 교수 (국민대) 주 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발 표 오문성 교수 (한양여대)
14:45-15:15	지 정 토 론 홍도현 세무사, 심충진 교수(건국대)
15:15-15:30	자 유 토 론
15:35-	(폐 회)

목 차

◎ 주 제 :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 주제발표 오문성 교수	7
■ 토론문 홍도현 세무사	22
■ 토론문 심충진 교수(건국대)	25

주 제 발 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 주제 발표자 | 오 문 성 교수
(한양여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

한국세무포럼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2023. 3.

오 문 성

한양여대 교수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목 차

I. 서론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III.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문제점

IV.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V. 정책적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세무대리 관련 플랫폼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AI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세무대리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현실
- 이러한 플랫폼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연구의 목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법세무대리 및 소개 알선 행위 등으로 인한 회원 및 납세자 피해사례에 대해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 불법행위로 인한 납세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 방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를 위한 현행 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 및 법령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함

3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1.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현황

-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 둘 이상의 독립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함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산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임
 -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용어였음
 - 최근 IT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스타트업과 산업 등등 아우르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됨

4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1.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현황

□ 국내 세무서비스 플랫폼 현황

서비스	업체명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서비스	업체명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서비스	업체명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세무사 비교견적	찾아줘 세무사	- 세무사 수수료 비교 - 세무사 찾기 - 세무상담 알선 - 세금계산기 제공 (제휴 세무사 668명)	- 수수료 견적 요청은 무료 - 세무상담의 경우 세무사별 유료서비스	이직잡 <							

*자료 : 인터넷 서칭을 통한 각 서비스 제공사 홈페이지 내용 참조하여 작성

5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1.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무서비스 관련 플랫폼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세무사 비교견적 서비스

-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과 같이 “세무”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무료 견적 서비스에서 크몽,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이 전 분야 전문가를 비교 견적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

○ 자동장부작성 서비스

- 전통적인 ERP시스템(이카운트)에서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세무사를 통한 기장대리 및 4대보험까지 확대하여 운영중

○ 세무신고대리 서비스

- 삼점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

6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2.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분쟁 현황

□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분쟁

-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로톡에 지불하는 비용이 특정기간 동안 플랫폼에 자신을 노출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고비’ 성격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사건 수임 여부에 따라 지불하는 변호사법 제34조의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변협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변경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유권해석을 위반한 광고금지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검찰 역시 로톡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에 등록된 변호사에 대한 탈퇴요구 및 징계 등 광고제한행위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7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2.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분쟁 현황

-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언니간의 분쟁은 환자 소개·알선과 수수료 지급행위에 대한 쟁점이 있음
 - 강남언니와 바비톡은 모바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예약과 상담을 연결해주면서 후기까지 관리하는 구조
 - 의료업계는 이러한 앱에서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는 영업모델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행위'라고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음
 -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해당 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2,100만여 원을 강남언니에게 지급한 혐의
 - 로톡과 강남언니의 서비스 차이점은 단순 광고인지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는지 여부
 - 로톡의 경우 광고수수료만을 받았지만, 강남언니는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기에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 있었다는 차이점이 존재

8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2.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분쟁 현황

-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의 분쟁에 있어서, 쟁점은 '약국 외의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정
 -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명, 약사명)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 앱 사용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약관사용 동의만으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 해당 플랫폼은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진 부분
 - 경찰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대한약사회는 경찰이 현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을 의식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음
 - 로톡과 강남언니의 경우, 알선 및 광고 측면에서 수수료 지급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닥터나우의 경우 전문자격사만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침범이라는 측면이 쟁점이 되고 있음

9

II.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

2.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분쟁 현황

- 한국세무사회와 삼점삼의 분쟁은 로톡이나 강남언니와 같이 단순히 광고 및 알선의 문제가 아닌 삼점삼이 세무사법이 정하는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로 확대됨
-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대리는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임
 - 삼점삼의 경우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넘어서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침해한 것임

10

III.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문제점

1. 전문자격사의 광고 및 업무수행 플랫폼의 문제점

-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중개 또는 알선도 법으로 금지된 전문자격제도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경우 그동안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중개 또는 알선의 합법화를 시도함
- 주로 의료 및 법률,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시장의 경우 공익성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음
 -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상법상 상인의 지위로만 볼 수 없음을 천명해 왔으며, 이에 따라서 이들 직역에서는 상업광고의 자유마저 관련법규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받아왔음
 - 특히 의료, 법률서비스의 경우 관련법규로 광고의 내용과 방식까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
 - 그런데도 이들 시장에 진출한 플랫폼들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중개 또는 알선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영업행태를 그대로 이어가며, 전통적으로 이들 시장에서 금지해 온 중개 및 알선 금지, 동업 금지,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
 - 전문자격사의 중개 및 알선은 해당 자격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음

11

Ⅲ.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문제점

2. 세무사의 광고 및 업무수행 플랫폼의 문제점

-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외형상 파트너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검토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한다고 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대표적인 세무대리 플랫폼인 삼점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납부 또는 환급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 납세자와 자비스앤빌런즈 간 세무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음
- 삼점삼 등 서비스 가입 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무담당자 안내 내용을 보내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자비스앤빌런즈 소속 직원을 세무담당자로 지정하게 됨
- 자비스앤빌런즈 광고에 따르면 세무대행, 세무상담 및 기장대행, 세무신고 대행, 결산 및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듯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이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보아야 함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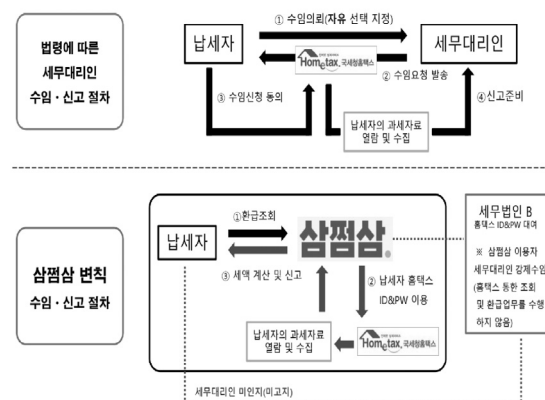
Ⅲ.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문제점

2. 세무사의 광고 및 업무수행 플랫폼의 문제점

□ 삼점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문제

○ 납세자는 단지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만을 입력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산정절차를 모두 삼점삼이 진행하고, 마지막 신고 단계에서만 납세자의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이용하여 삼점삼이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법원(2020.5.28. 선고 2015도8490 판결)이 세무사법 제22조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삼점삼은 단순히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순 조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것이므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세무대리'를 한 것임**



13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1. 주요국의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 주요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지식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지식서비스 제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함
 -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세의 환급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고용한 자 중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IRS가 발급하는 TPIN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독일의 Steuerberater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세무관련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주요국의 공통된 규제는 다음과 같음
 - 변호사, 세무사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자가 되지 못함
 - 인정된 전문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한함
 - 전문가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수익분배를 금지
 - 광고 또는 상업활동을 제한

14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① 무자격 세무대리 관련 쟁점

-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및 그 밖에 이들 업무에 딸린 업무까지도 세무대리에 포함
- 세무사로서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 삼점삼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 볼 수 없음
- 삼점삼은 단순히 영수증 전산화 등을 통해 환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무사법이 말하는 세무대리로 볼 여지가 충분함

15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②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쟁점

- 삼점삼의 경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2개 업체,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음(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됨
- 서비스 사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지휘·감독없이 프로그램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세무법인이 아닌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사실상 납세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파트너 세무사가 자비스앤빌런즈와 형식적인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자비스앤빌런즈로 하여금 1,200만 건에 이르는 세무대리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16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③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관련 쟁점

-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에는 법률행위의 대리는 물론 사실행위인 대행(代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파트너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 '세무대행 업무범위' 라는 표현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삼점삼 서비스 광고에는 파트너 세무사,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광고·표시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광고상 세무대리 주체를 삼점삼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즉,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삼점삼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수임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삼점삼 서비스 이용 시 세금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 삼점삼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음
- 단순히 광고문구에서 '전문성 높은 공식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는 사유가 파트너 세무사와 협업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17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사업모델의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

- 삼점삼의 사업모델은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가 핵심
 - 민간기업이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였기 때문
 -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된 정보임
 - 국가가 수집·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가명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함
 - 이에 민감정보의 대리업무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만 가능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음
 - 그런데,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점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짐
 - 삼점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음

18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사업모델의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르면 법률 등에 정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 정의(제2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계약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주체와 동등한 지위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 지위를 그 납세자와 동등하게 보아야 함
 - 세무사법에서 정의하는 세무사의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기에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삼점삼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19

Ⅳ.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

2. 세무 관련 플랫폼의 규제방안

□ 삼점삼 사업모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관련 문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 :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학교 및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 의무대상자가 됨
 - 자비스앤빌런즈가 중소기업이며 비상장기업이기에 정확한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2022년도 5월중에만 환급세액이 2,273 억원이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데 삼점삼이 수수료로 환급세액의 10%~20%를 받고 있는 점, 삼점삼 외에도 자비스 세무대행과 같은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100억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균이용자 수의 경우 2022년 4월까지 방문자 수가 2,810만명이라는 홈페이지의 광고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23만명/일 수준이기에 이용자 수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의무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불구하고, 2023년 3월 현재까지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회되지 않음

20

Ⅴ. 정책적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규제의 방향성 제시

- 주요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가 인증하고 인정받은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방안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법률·세무서비스 등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문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전문가는 법률, 조세 등 각자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전문지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IT,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증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할 것

21

V. 정책적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한계와 대안

-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문제를 기술혁신 내지 시장중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를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세무대리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세무사법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위법 여부를 정확히 따져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플랫폼에 의한 세무사 광고 및 알선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금지할 정도로 유해하지 않다면 세무사법과 하위 법령에 적정한 규율 체계를 만들어 세무사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사전심의와 같은 세부적 규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
 -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같은 절차를 세무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2

V. 정책적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결론 : 입법적 개선방안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

- 관련 플랫폼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세무사법에 신설하여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플랫폼의 허가) 정부와 세무사회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플랫폼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전적인 플랫폼의 광고심의 절차: 세무사광고 심의위원회 신설) 세무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공인된 이력, 경력 등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인정되지 않는 허위광고 등을 게재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도 마련
 - (사후적인 플랫폼의 평가 절차: 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자 역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23

V. 정책적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결론 : 입법적 개선방안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삼점삼과의 분쟁에 있어서 세무사법상 대리행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음

- 삼점삼 측에서, 법리적으로 '삼점삼의 행위를 소득세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예외적인 사유(급박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지 않으면 현재 세무사의 자격 논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으로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기에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세무사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법률인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플랫폼과 세무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 세무사법 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세무대리 업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예외규정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음

24

감사합니다.

25

토 론 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

1. 발표내용 요약

발제자께서 플랫폼 사업자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점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담당 임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삼점삼,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세무의 달인 등 세무 관련 여러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유형을 비교한 내용 중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로톡과 다르다는 점에 많은 발표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세무사, 의사, 중개사들의 로톡, 삼점삼, 강남언니, 직방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신 오문성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한국세무사회의 대응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세무사회는 삼점삼이 강남경찰서로부터 세무대리 혐의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 이의신청하였고 검찰에서는 재조사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 입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회의 로톡 손을 들어준 점에 대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로톡은 광고선전이나 소개알선이고 삼짍삼 등 세무 플랫폼은 단순히 소개알선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2개 업체 6명의 세무사가(가입 회원 약 1250만 회원)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개알선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쟁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현황임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은 공익성을 담보한 전문직업으로 전문자격사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동의서 한 장으로 국세청의 모든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할 수 있음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임.

- 세무사법

- 1)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무원, 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 3)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및 광고 문제

3. 토론자의 의견과 질문

(1) 토론자의 의견

우선 세무통, 찾아줘 세무사, 세무의 달인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플랫폼사업자를 비교분석을 한 내용이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로톡의 경우 변호사의 광고 선전으로 사건을 관련 변호사에게 연결하여주고 광고비를 수수한 내용으로 재판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소개알선이고 세무 플랫폼 사업자는 세무신고 대행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삼점삼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 ID/비번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 업무로 이는 전문자격사 즉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서 한 장으로 국세청의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질문

- 삼점삼에 대하여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로톡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변호사회에 과징금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전문자격사 제도는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 방법에 대하여 공익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
- 삼점삼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사업 형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세무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상기 플랫폼 사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유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즉 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능한지.
-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 홈텍스 ID/비번을 이용하여 모든 가입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세무 정보 조회 및 수집 이용을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 심충진 교수(건국대) |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플랫폼 사업을 통한 새로운 전자적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이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영역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문성 교수님의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는 전문자격사 플랫폼 운영 현황과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문제점, 그리고 전문자격사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과 개선방안으로 중심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의 의미와 현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문제점

원래 플랫폼 자체는 일반적으로 교환되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거래 수수료, 광고 또는 구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확장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사업은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높은 대량의 정보처리 능력과 분석 능력을 무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능 강화로 인해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중 세무신고대리 서비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의 침해 사실, 세무사 명의대여, 납세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 개인정보보호 침해 문제 등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무관련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은 세무신고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수료 등 납세순응비용도 낮아지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대리의 중개 및 알선 금지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의 대응

발제자께서 삼짍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동안 세무사 자격이 없는자에 의한 세무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미등록 세무사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삼짍삼의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 11월 세무대리의 중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중개 및 알선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는 2022년 8월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직도 논란의 소지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 플랫폼을 이용한 세무신고대리와 참여 세무사 숫자

플랫폼 화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세무신고를 대행한다고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가 직접 세무신고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납세자가 일시에 인터넷 상에 접속하여 세무신고 대리를 원할 경우 세무전문가가 해당 세무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세무대리를 할 경우 플랫폼 회원 수 또는 세무대리 신고량에 따라 참여 세무사의 숫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근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플랫폼 사업자가 납세자의 정보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수집할 경우 납세자가 의뢰하는 특정 세목만 접근을 해야 하는데, 현재 홈택스 시스템상 특정 세목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홈택스에 있는 개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시스템의 정보 접근의 제한이 필요한데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 관련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의 부당한 접근이나 활용을 방지하고 탈퇴회원 정보의 영구적 삭제 등에 대한 보고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고 위원 중에는 세무전문가는 없는 실정이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세무사법에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익의 분배 제한 규정

발제문 중 주요국의 공통된 규제 중의 하나로 전문가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익분배 금지 규정이 있는데, 우리도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는 세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등을 할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무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요? 세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의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향후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확장이 세무전문가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 측면에서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한 플랫폼의 허가, 사전적인 플랫폼의 광고 심의절차, 세무사 광고 심의위원회 신설, 사후적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에 동의하며 한국세무사회의 조직 구조에서 플랫폼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대응하는 안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로서 발제 내용 이외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I의 개발과 운영에 세무사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세법적 지식만 있으면 전문자격사의 고용 또는 지휘·감독 없이도 각 세목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세무사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사 반드시 참여해야 되듯이 세무신고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세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잡한 세목에 대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세무전문가의 참여 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 개발시 세무사의 참여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삼점삼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직접 세무신고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세무신고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등에 세무사의 직접 참여 확대방안 또는 정기적 자문 및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향후 더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신고 항목별 표준 투입시간제도를 도입하자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할 때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으로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사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세무사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세목별 “세무조정 표준시간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정보의 품질도 높아지고 세무사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신고시 표준 투입시간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 ChatGPT의 발전과 세무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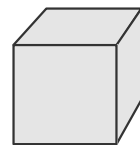
최근 대화하는 Chat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와 Chat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납세자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은 고도로 발전되어 납세자가 과세자료만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면 현재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시대에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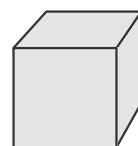
오늘의 논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세무전문가의 역할 분담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전문영역을 계속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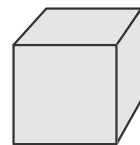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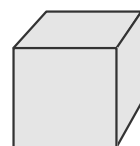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30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 쇄 일 2023년 3월 28일

발 행 일 2023년 3월 29일

발 행 인 원 경 희

발 행 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

